

해방직후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과 재산처리 과정 고찰*

공미희**

〈목 차〉

I. 서론	III.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 과정
II.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	1. 법령 제2호에 의거한 귀속재산 처리
1. 일본인의 귀환 배경	2. 법령 제33호에 의거한 귀속재산 처리
2. 부산항 도착까지의 일본인의 귀환 절차 및 특징	3. 부산지역에서의 귀속재산 양상
3. 부산항에서의 일본인의 귀환 절차 및 특징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본고는 해방직후인 1945~1946년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과 재산처리과정에 대해서 고찰했다. 먼저, 부산항도착까지의 귀환절차 및 특징과 부산항에서의 귀환절차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산항도착까지 일반일본인의 경우, 1945년 9월 25일까지 귀환자의 수송은 외사과의 관리하에 안내소가 실시했고 1945년 10월 16일 일본인들의 숙박시설과 구제에 관한 업무를 안내소에서 세화회로 옮겼다. 귀환할 모든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장티푸스와 천연두 예방접종을 해야 했고, 일본인 세화회 대표가 귀환자들의 철도운임에 대한 금액을 안내소에 대행했다. 안내소에서는 은행어음과 여행증명서를 발행해 다시 일본인세화회에 교부하면 세화회 대표가 개인에게 배부했다. 외사과는 귀환자에게 수송일시를 알리기 위해 적어도 수송예정일 전날에 일·영문의 라디오방송문을 준비해 안내소에 통지했다.

특별집단인 일본군인과 그 가족의 경우는 일본군연락부가 경성지역 외에 있는 제대군인에게 출발시간을 알렸다. 수송열차는 통상 귀환자의 수송방법과 같이 외사과가 준비했고 일본군연락부는 일본인세화회에 협력해서 장티푸스와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위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학플러스사업단 연구교수.

해 일본육군의 확친을 사용해 귀환자의 처리를 맡았다. 귀환 작업에 있어서 기타 순서는 앞에 기술한 일반인 귀환의 경우와 같다.

다음으로 부산항에서의 귀환절차를 살펴보면, 일본군인과 그 가족인 경우는 금지제품 검사반, 안내반, 수입반, 운송반, 정리반으로 구성이 돼서 귀환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일반일본인은 부산일본인 세화회와 안내반이 주축이 되어 승선절차를 실시했다.

부산항에서 선박수송은 계획적으로 이행되었으나 계획수송에 따르지 않고 개개 혹은 단편적으로 부산으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숙소(宿舎)에 수용해 단체를 결성시킨 뒤 승선시켰다. 특히 부산거주자인 경우는 단독승선을 금지했고 일정한 정원(250명)이 되도록 지은사(智恩寺) 수용소에 수용한 후 단체를 결성시켜 승선시켰다.

마지막으로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매매를 허용한 법령 제2호가 한국 내부에 강한 반발을 초래했으므로 1945년 12월 6일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불인정한다는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 법령 제2호와 법령 제33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에서의 귀속재산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남한 거주 일본인, 부산항, 귀환절차, 귀속재산, 법령 제2호, 법령 제 3호

I. 서론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패전 후 동북아해역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붕괴와 함께 구 식민지역에서는 일본인의 퇴출로서 송환과 귀환¹⁾ 정책으로 대대적인 인

1) 귀환, 인양, 송환 그리고 복원에 대한 용어 쓰임새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장석홍은 귀환의 의미를 단순 이주가 아닌, 식민통치의 강제와 모순에서 비롯한 이주 및 강제동원으로 해외에 나갔던 한인이 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규정(장석홍, 『해방 후 한인 귀환의 역사적 과제』, 역사공간, 2016.); 황선익은 인양(引揚)은 종전 시 해외에 있던 육해군인·군속과 일반일본인[邦人]이 포츠담선언 제9조에 따라 인도적 취급에 의해 조국으로 귀환하는 것(『引揚について』 『引揚援護の記録』, 引揚援護廳, 1950, 1면.)이란 의미에서 좁게는 ‘歸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引揚의 주도권이 연합군사령부에 있어 전후처리의 업무로 진행됐다’(위의자료, 11면.)는 점에서 ‘送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기술(황선익, 『해방 전후 在韓日本人의 敗戰 경험과 한국 인식 -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4, 한국학연구소, 2010, 1089-1090면.) 또 황선익은 인양을 해외의 일본인을 현지에서 구출하여 귀환시킨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내재된 용어라고 설명(황선익, 『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연구』,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4면.); 김경남은 일본에서는 일반인의 귀환에 대한 용어를 사용할 때 ‘引揚(ひきあげ)’이라 하고, 군인과 군속의 귀환은 ‘復員’을 사용했다고 기술(김경남, 『재조선 일본

구인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인 귀환자들은 제국의 영역 내에서 각국에 따라 각기 다른 일본제국의 붕괴 방식을 경험했고, 각국의 내셔널리즘이라는 전혀 다른 귀환 조건 속에서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런 동북아해역에서의 인적이동의 규모·범위·방식 등은 각 지역에서의 전쟁 상황 및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었고 이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해외에서 일본본토로 돌아온 일본인 규모는 최소 630만 명에서 최대 70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1945년 일본본토 인구를 대략 7천만 명으로 보았을 때 약 9-10%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과거 일본제국이 아시아태평양 각지의 광대한 식민지와 점령지에 자국민을 식민자로 이주시킨 결과였다. 특히 동북아해역에서의 이들의 귀환규모를 구 거류지별로 살펴보면 한반도가 약 92만 명(남한 약 60만 명, 북한 약 32만 명), 중국본토가 약 154만 명, 구 만주지역이 약 105만 명, 대만 이 약 48만 명이었다. 그 밖에 구 소련지역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약 47만 명, 쿠릴·사할린이 29만 명, 대련이 약 23만 명이었다.²⁾

각 지역에서의 귀환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지방이나 북한과 같은 소련 점령지역에서는 귀환할 일본인들에게 많은 폭행이 이루어진데 반해, 남한, 중국·타이완·베트남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귀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구 식민지에서의 일본인들의 일괄적인 귀환은 일본사회에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반도³⁾에서도 약 90여만 명의 일본인들이 한 번에 귀환하는 것 보단 일본인들의 한반도에의 잔류유도와 생명재산의 보호, 그리고 제한적 귀환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폭행, 협박, 약탈에 일본인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 동북아역사재단, 2008, 306면.) 본고에서는 대상이 재조선일본인이므로 장석홍의 정의를 바탕으로 귀환을 단순이주가 아닌, 일본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의 강제와 모순에서 비롯된 이주로 해외에 나갔던 일본인들이 패전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인양을 좁게는 ‘歸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황선익의 주장에 근거하여 재조선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부 귀환이라는 용어로서 통일한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미군정의 입장에서 일본 군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경우에는 송환이라는 용어도 사용

2) 이연식, 『일본제국의 붕괴와 한일 양 지역의 전후 인구이동: 양 국민의 귀환과 정착과정 비교』, e-Journal Homo Migrans Vol.2, 이민인종연구회, 2010, 87~92면.

3) 해방당시 1944년 5월 한반도 거주 일본인은 남자 345,561명, 여자 367,022명, 합계 712,583명으로 한반도 총 인구의 3%에 미치지 못했음을 기술(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1964, 2면.)

느낀 조선총독부와 미 군정청은 일본인의 귀환을 서둘렀다. 일본인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었고 각 은행은 인출 초과현상을 보였으며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간 돈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환전상⁴⁾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인들은 가재도구를 헐값에 내다 팔아 이익을 챙겼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천 엔보다 많은 돈과 소지품을 가지고 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밀항선⁵⁾을 이용한 귀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밀항⁶⁾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로서 부산지방 교통국장 다나베 다몬(田邊多聞)이 이날 상부의 지시로서 가장 먼저 받은 비상업무가 조선총독부인 일행이 일본 본토로 타고 갈 기편선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⁷⁾ 당시 패전소식을 접한 순간 권력을 독점한 고위간부들을 비롯해 정보가 빨랐던 일본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유재산을 몰래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했다. 조선총독부도 일본인의 빠른 귀환절차를 밝히 위해 「終戰事務處理本部」를 개설해 경성·대전·대구·부산·전주·여수·광주의 7개 도시에 안내소를 두어 일본인의 귀환과 구제(救濟)사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 전주·여수·광주 지부는 통신기관 결여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며 38도선이

4) 일본인들이 인출한 조선은행권을 일본에서 돌아오는 조선인들로부터 사들여 놓은 일화(日貨)로 환전해줬다. 환전상들은 환치기 수법으로 양쪽에서 이득을 챙겼고 모은 돈으로 일본인 재산을 헐값에 매수하거나 한일 양 지역 사이의 밀수에 관여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역사비평사, 2012, 35~36면).

5) 부산에는 많은 밀선회사가 있었고 운임으로는 150엔을 받았으며 이런 밀선은 군경과 조선인 여자 검사원의 물품 검사를 피할 수 있었다. 부산역 앞에 일본인 세화회가 어느 선박회사가 비밀리에 출항할 것인가를 알려줬으며 1946년 3월 시점에 주한 미군이 일본의 GHQ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밀선이용자 수가 18만 5,156명에 달했다(이연식(2012), 앞의 책, 93~94면).

6) 일본의 패전 이후 재조선 일본인들은 사유재산을 다 가져가기 위한 밀항이 많았고 또한,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불안하여 일본으로부터 귀환하는 우리 동포 속에 숨어서 밀항해 부산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민주중보』에 의하면 맥아더사령부는 일본인의 조선도향을 발견 즉시 도(道) 경찰부에 통지에 주면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했다(「密航한 倭人 釜山에 潛伏」, 『민주중보』, 1946.1.14; 「조선서 번 돈 갖고 돌아가려면 밀항선을 타세요」, 『한겨레신문』, 2019.02.17).

7) 8월 17일 비밀리에 조선총독부인 일행이 부산에 도착해서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탔지만 이때는 부인일행이 조선에서 수집한 귀중품들의 과적 때문에 목도(영도)에서 배가 한쪽으로 점점 기울여 줘서 결국은 절반 이상의 짐을 바다에 버리고 겨우 다시 부산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田邊多聞, 「終戰直後の釜山地方交通局」, 『朝鮮交通回顧録 別冊 終戰記録編』, 1976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第二卷』, 東京: 巖南堂書店, 1980, 285면); 이연식(2012), 앞의 책, 16면).

북의 안내소는 소련군이 지역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정지시켰다.⁸⁾ 1945년 9월 25일까지 조선총독부보호부의 계획대로 귀환자의 수송은 외사과(外事科)의 관리하에 안내소⁹⁾가 실시했다. 안내소는 귀환자에게는 조선총독부 발행의 귀환자 특별승차증명서를 교부했고 귀환자는 역 또는 교통공사에서 그 증명서와 교환으로 표를 구입해 보통의 객차에 타서 출발했다. 그러나 1945년 10월 16일 이후엔 세화회가 이런 일본인 귀환업무를 대행했다.

한편, 9월 28일 이후부터는 일본인의 재산처리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서 법률전문 직원을 두었다.¹⁰⁾ 한일 양국은 재산의 성격 및 처리방식에 대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인들은 일본총독부를 비롯한 일본기관 및 개인들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한반도를 식민지화 할 목적으로 이주정책을 실시해 결국은 조선인들에 대한 강탈과 착취의 산물로 이루어진 재산이기에 당연히 한국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반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일본에서 자본을 들여와 자신의 공장과 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므로 한국에서 일군 자신의 재산들은 귀환할 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남한거주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한 인식은 한일 양국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으며 실제로 당시 그 재산의 성격과 처리방식을 두고 양 민족은 갈등양상을 초래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미국총사령부 군정청이 개입해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남한거주 일본인의 재산을 귀속재산¹²⁾으로 명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귀속재산에 관한 미군정의 법령 발표와 아울러 한반도에서는 일본인들의 귀환자 원호활동과 일본인의 재산처리 건으로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났다.

8)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7~8면.

9) 외사과에서는 일본인 주민은 가급적 속히 본원사에 있는 안내소에 출원하여 귀환수속을 받으라고 지시, 현재는 하루에 한 대의 기차로 일본인 귀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수속이 절대 필요함을 발표(「同胞歸還과 日本人撤退」, 『민중일보』, 1945.11.21.)

10)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9면.

11) 민통(民統)은 조선내 일본인 재산은 전부 조선인의 피땀 흘린 것을 착취하여 일본인이 자기의 것이라고 먹지를 부쳐 놓은데 불과한 것이므로 조선내 일본인 재산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일본인 재산의 배상 대상 반대」, 『자유신문』, 1946.11.13).

12)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1945년 8월 15일 직전까지 한반도 내에 있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들의 공적재산 및 사적재산이 해방 후 미군정에 귀속된 재산을 말한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반도거주 일본인 귀환 및 전후의 한국인식에 관한 연구와 귀환자 원호체계 및 원호활동에 관한 연구 특히, 원호단체인 세화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귀환정책에 따른 미군정의 대응 및 재조선일본인의 재산처리 양상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다소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최영호(2003)는 해방직후 특히 부산·경남 거주일본인들의 귀환자 동향과 이들의 귀환에 대해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청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했는지에 관하여 분석했고 또한 최영호(2008)에서는 부산항의 일본인 귀환상황과 이들을 둘러싼 원호단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군산세화회 결성과정과 조직 활동을 서울과 부산의 세화회 조직에 관한 연구와 대조해서 일본인 귀환의 지역적 특징을 도출했다(최영호(2014)). 한편, 일본으로의 귀환 및 원호단체 활동과 아울러 재조선일본인들이 경험한 ‘패전’의 기억 즉, 그들의 회고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 귀환 과정에 관한 기억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일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최영호(2006), 김경남(2008), 황선익(2010), 이연식(2012)).

재조선일본인의 재산처리 양상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귀속재산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구적 연구는 이대근(1988)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미군정기부터 이승만정권기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의 접수, 관리, 불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과정에서의 실체 및 양상 등으로 한국인과 남한거주 일본인들의 갈등표출인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귀속재산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한국 경제발전에 끼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했다. 김기원(1990)은 귀속재산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귀속재산이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배석만(2014)는 김기원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해방 후 미군정이 귀속재산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과정, 접수한 규모, 그리고 관리를 거쳐 이승만정권에 인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했다. 이와 아울러 이연식(2009)과 최영호(2011)는 사유재산에 대한 조선사회의 논의와 주장을 건준의 자주호양론에 초점을 두어 전개했고 조선인양동포세화회(朝鮮引揚同胞世話會)¹³⁾의 재산권 보상 요구활동의 문제가 한일회담과 일본정부의 자국민

13)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귀환한 직후에 일본에서 결성한 최초의 전국적이고 통합적인 단체

전후처리 정책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했다. 한층, 일제시기 한반도에서 폐쇄기관에 속하지 않았던 개별 일본인 재산 사례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래·배석만은 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접수 및 유실여부 그리고 이 귀속사업체가 이후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김대래·배석만(2002), (2008), (2009)).

이상으로 일본의 패전직후 재조선일본인의 귀환양상 및 귀환자 원호활동과 전후의 한국인식에 관한 연구, 귀환정책에 따른 미군정의 대응 및 재조선일본인의 재산처리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연구는 주로 어떤 특정지역에서의 귀환자 규모와 체계 분석 그리고 원호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귀속재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에 관한 분석과 아울러 이 귀속재산이 향후 한일회담과 일본정부의 자국민 전후처리 정책에서의 전개방법 등 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에서의 귀환자 규모와 체계분석 이외 당시 귀환자들의 실제상황과 구체적인 절차과정 및 특징 등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다. 또한 재산처리과정에 있어서도 향후 한일회담에서 일본 역청구권의 계기를 제공한 사유재산제 인정 가부에 따른 사후 한국인들의 반응 등에 대한 분석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귀환이 거의 완료된 시기인 1945~1946년 남한 거주 일본인으로 범위를 좁혀 대부분의 귀환자들이 배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던 부산항 도착까지의 귀환 절차 및 특징과 그리고 부산항에서의 일본인의 귀환 절차 및 특징에 대해 사료와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증적인 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사유재산제 인정 가부 논쟁에 대한 중심내용인 법령 제2호와 제33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한국인들의 반응과 사회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미시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법령 제2호와 제33호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에서의 귀속재산의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II.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

1. 일본인의 귀환 배경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횡포를 부려 권력을 장악했던 일본인들은 패전이 되자 권력에서 밀려났고 실직이 되는 등 일제강점기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일본인들은 폐허가 된데다 생활의 터전도 없는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꺼려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일본정부도 초기에는 일본인들의 일괄적인 귀환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잔류유도와 함께 제한적인 귀환을 추진하고자 했다. 따라서 남한 거주 일본인에 대해서 당초는 잔류도 귀환도 일본인의 자유의견에 맡겼고 단지 마을 소재지에서 10키로 이상의 여행을 금지하는 정도¹⁴⁾이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성 YMCA 조선어 강습회¹⁵⁾에 참가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희망했고 심지어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희망자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반일감정이 격화되어 많은 폭행사건의 연속이었다. 즉, 경성에는 완장을 두른 한국인들이 경찰서와 파출소를 습격해 일본인 경찰관을 쫓아내고 무기를 빼앗았다. 또한 신문사, 회사, 공장, 대학 등에서도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퇴출을 요구해 시내는 무질서한 상태였었고 이런 사태는 1~2일 만에 지방으로 전파하였다. 와카쓰키 야스오(若槻泰雄, 1991)의 기록¹⁶⁾에 의하면 8월 16일부터 8일간 전 한반도 내 경찰서에 대한 습격이나 점거, 접수요구가 149건, 경찰관 포함 일본인에 대한 폭행, 협박, 약탈 등은 146건, 살해 6명이었다.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것보다 일본에 협력한 조선인에 대한 복수 행위가 2배 이상, 살해만으로도 4배 이상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층, 종전사무처리본부보호부(終戰事務處理本部保護部) 총무반장으로서 일본인

14) 일본인은 경찰서를 경유해서 군정청이 발행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10리 이상의 여행이 금지되었고, 그 범위 내를 여행하는 자도 그날 밤 교통금지 시간까지는 꼭 귀환해야만 했다(『在鮮日本人はすべて世話會に登録を十哩以上の無許可旅行禁止』, 『京城日報』, 1945.10.11).

15) 1945년 9월 1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목·토 오후 4시부터 90분 동안 경성 YMCA에서는 조선어 강습회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첫날엔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든 것을 보면 잔류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이 많았음을 의미(이연식(2012), 앞의 책, 80~83면.)

16)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東京:時事通信社, 1991, 233~235면.

의 귀환 수송 관계 사무를 담당해왔던 하라다 다이로쿠(原田大六)씨가 조선인에게 저격되었고 또 연속해서 부하 쓰보이 항마쓰(坪井盤松)씨가 하라다(原田)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중 저격되었다.¹⁷⁾ 이에 당초 일본인의 잔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군정도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일본인의 위험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미군정청은 일본인의 집결거주 또는 귀환을 권했고 이에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은 일본인의 귀환 작업을 빨리 서둘렀다. 이런 귀환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남한 거주 일본인들이 배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던 부산항 도착까지의 귀환 절차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 부산항 도착까지의 일본인의 귀환 절차 및 특징

1945년 9월 25일까지 조선총독부보호부의 계획대로 귀환자의 수송은 안내소가 실시했고 1945년 10월 16일 일본인들의 숙박시설과 구제에 관한 업무를 안내소에서 세화회로 옮겼으며 이 세화회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유일한 민간단체로서 공인했다. 일본인 거주민은 동년 11월 1일 미군정청 법령 제 6호에 의해서 군정청과 일본인 민간단체인 세화회에 등록했고 이세화회는 외사과의 지시를 받은 안내소장을 통해서 수송 귀환자의 수, 승차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다. 당시 귀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1,250의 집단에 소속되었고 이 집단에는 일정의 번호가 붙여졌으며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은 지정된 정차장에 출두했다.

일본으로 귀환하는 모든 대상자는 먼저 장티푸스와 천연두 예방주사를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했다.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 윌리엄 제이 겐 중사와 의사이고 세화회원이기도 한 스즈키 키요시(鈴木清)에 의해 이동 의료국이 결성되었다. 1945년 10월 16일부터 이동의료국에서 주사증명서를 발행했고 귀환대상자는 승차에 앞서 주사증명서를 제시해야 되었으며 제시하지 않으면 승차는 거부되었다.¹⁸⁾ 또한 모든 귀

17) 井手勇, 『終戦後の朝鮮(一)―米軍政廳とその施政方針―』, 『同和』, 1961.10.1.(四).

18)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18면; 李淵植, 『解放後 韓半島 居住 日本人 歸還에 關한 研究-占領軍·朝鮮人·日本人 3者間의 相互作用을 中心으로』, 서울市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98면.

환열차는 그 중 한 량을 병원 칸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세화회의 지원 하에 일본인의사와 의대생을 동승케 해 열차 내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동년 12월까지 각각 182명과 2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두 대의 병원열차가 부산에 보내졌고 의료팀 또한 파견돼 일본인 및 조선인 귀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수행했다.¹⁹⁾

승차운임은 성인이 12세 이상으로 20엔 50전 전액을 지불해야 했고 소아는 6세에서 12세 까지로 반액의 10엔 25전을 지불, 6세미만은 무료였다. 당시 경성시내에는 세화회대표가 32명 있었고 이 세화회대표가 귀환자들의 승차운임을 모아서 안내소에 지불하면 안내소에서는 승차전원의 운임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은행어음 및 여행증명서를 발행했다. 이 어음 영수증은 사본 1통과 함께 세화회에 교부되었고 사본은 외사과의 세화회 관계문서에 철해졌으며 그 여행증명서는 세화회대표가 개인에게 배부했다.²⁰⁾ 이렇게 일본인 세화회는 귀환할 일본인에 대한 제한사항²¹⁾을 제시해 남한 거주 일본인들의 귀환업무 대행을 실시했다.

그리고 외사과는 귀환자에게 수송일시를 알리기 위해 적어도 수송예정일 전날에 일·영문의 라디오 방송문을 준비해 안내소에 통지했으며 즉시 그 발표문은 방송용 신문용으로서 공보국(公報局)에 회부되었다. 출국일본인 수송의 우선순위는 무장해제한 현역일본군부대, 휴가중 및 제대한 군인과 그 가족 등 일본군대의 송환을 최우선으로 했다. 군대 다음으로 경찰관과 신관(神官)²²⁾, 기생(芸者), 유녀(女郎), 일본인 광산노동자였다. 1945년 11월 2일 외사과장 엔더스소령은 신관은 군대와 함

19) 「게인 보고서」31면(신재준, 「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군사』10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7, 69-70면 재인용).

20)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18-20면.

21) ① 민간인 1인당 천 엔에 한정해서 항구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교환비용은 조선엔 1엔이 일본엔 1엔이며 천 엔밖에 휴대할 수 없었다(1945년 10월 연합국총사령관 발전보 181007에 의함). ② 짐은 각자가 자기혼자서 가지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소지한다. ③ 금과 은, 유가증권, 금융상의 서류, 소유자의 의류, 총, 카메라, 보석, 미술품, 수집우표 등은 국외로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1945년 10월 12일 연합국총사령관명령, A-6, 09131에 의함) ④ 귀환자의 엄중한 검사가 군부대의 손으로 행해져 압수품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교부된다. 그러나 이런 물건은 항구까지 가져와서는 안 된다. ⑤ 적어도 5일분의 식량을 휴대(携行)해야만 한다. ⑥ 대체로 철도수송에는 7, 5명의 탑승의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22면).

22) 조선에는 신사(神社)에 50명, 신사(神祠)에 60명의 신관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36명의 신관이 가족과 함께 귀환했다(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위의 자료, 24면).

게 일본의 침략선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즉시 각지의 일본인세화회에 등록시켜 재빨리 일본으로 귀환시키려 했다. 기생과 유녀는 가까운 일본인세화회나 군정청 기관에 등록해야만 한다고 12월 5일 엔더스소령은 명령했고 그녀들을 급히 가능한 단체편성으로 귀환시켰다. 광산 관계자 귀환도 우선적으로 취급된 것은 동경의 연합군총사령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일본 경제부흥을 위한 최종점 산업으로 지정되었던 석탄산업을 위한 기술자와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출국일본인 수송의 우선순위는 일반민간인의 원호대상자, 상급 공무원과 상급 회사 직원을 제외한 그 외 일반 민간인, 상급 공무원과 상급 회사직원, 미군정장관이 승인한 교통 및 통신요원 순이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자 하는 경성지역이외의 일본인 귀환절차도 부산항 승선 전까지 연합국 총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현지 일본인단체에 먼저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일본인 세화회의 운영에 따라 귀환 순위의 결정, 예방접종(천연두, 장티푸스), 개인별증명서 발행업무 등을 이행했다. 경성 외사과가 철도수송을 허가해 현지 일본인 세화회에게 그 지역에서 부산 승선항까지 귀환자의 운임에 대한 것을 어음으로 구입해 군정청교통국에 지불하도록 했다.²³⁾

이상으로 일반일본인이 부산항도착까지의 귀환절차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은 특별집단인 일본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한반도에서의 일본육군의 송환은 1945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군부대의 송환은 민간인의 귀환을 담당한 군정청 외사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외사과가 일본군인과 그 가족의 귀환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인에 대한 책임당국은 제 24군과 외사과 2개가 존재했다. 일본군 연락부는 일본육군통신시설을 사용해서 경성지역 외에 있는 제대군인에게 출발시간을 알렸다. 수송열차는 통상 귀환자의 수송방법과 같이 외사과가 준비했고 일본군 연락부는 일본인세화회에 협력해서 장티푸스와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위해 일본육군의ワクチン을 사용해 귀환자의 처리를 맡았다. 일본군인과 그 가족을 대량으로 수송할 때는 일본군 연락부의 분유대(分遺隊)가 출장해 열차 탑승과 발차 후 구내청소를 도왔으며 귀환 작업에 있어서 기타 순서는 앞에 기술한 일반인 귀환의 경우와 같았다.²⁴⁾

23)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21면.

24)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23~24면.

경성 및 타 지역에서 부산에 도착한 귀환자들은 열차에서 내려 검사장까지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짐이어야 했다. 남한에서 일본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필요했고 비행기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선박을 이용해야만 했다. 다음절에서는 부산항에 도착한 귀환자들의 승선까지의 절차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3. 부산항에서의 일본인의 귀환 절차 및 특징

부산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접안(接岸)시설이 잘 되어 있어 귀환 항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일본 패전 당시 부산에 거주했던 일본인도 7만명 정도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으며 남한 거주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몰려들었다. 항구에 밀려든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고, 관부연락선의 출발지인 부산항에서 화물수송용의 기범선, 어선 등 있는 모든 배를 이용해서 일본으로 향했다.²⁵⁾ 당시 남한 거주 일본인들이 부산항을 경유한 귀환자수를 살펴보면 1945년 478,956명이고 1946년 12,514명으로 합계 491,470이었다는 것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⁶⁾

[표1] 부산항 경유 일본인 귀환자 수

년월	남한	년월	남한
1945. 8.	4,895	1946. 5	117
1945. 9.	100,682	1946. 6	53
1945. 10.	169,263	1946. 7	0
1945. 11.	176,376	1946. 8	0
1945. 12.	27,740	1946. 9	0
1946. 1.	4,083	1946. 10	0
1946. 2.	5,379	1946. 11	0
1946. 3.	2,257	1946. 12	0
1946. 4	625	1947. 1.	0
합계	491,470		

출처: 丸山兵一, 「慶尚南道及び釜山の引揚(二)」, 『同和』, 1961.10.01.(四).

25) 若槻泰雄(1991), 앞의 책, 234-235면.

26) 丸山兵一, 「慶尚南道及び釜山の引揚(二)」, 『同和』, 1961.10.01.(四).

부산 거주 일본인 가운데는 미군이 진주해 오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선박을 빌려 서둘러 귀환한 사람이 많았다.²⁷⁾ 이후 부산 일본인세화회에 의하면 부산, 경남 거주 일본인들 중 1945년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에 걸쳐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선박을 빌려 귀환한 사람이 33,000명 이었다고 파악했다.²⁸⁾ 부산 교통국에서는 동년 8월 17일 처음으로 귀환선에 대한 회의를 열었고 종전시(終戰時) 부산항에는 관부연락선이 한척도 없었으므로 히로시마 철도국에게 선박 배치를 의뢰했다.²⁹⁾ 당시 부산 교통국장 다나베 다몬(田邊多聞)의 일지 기록³⁰⁾에 의하면 8월 20일 패전 후 처음으로 연락선 흥안환(興安丸)을 맞이해 마음이 든든했음을 기억한다고 기술했다. 또 8월 22일 저녁 무렵 덕수환(德壽丸)이 입항해서 종전 후 제 2의 선박으로서 일본에 출항했고 8월 24일자엔 이 덕수환에 부산거주의 교통국원 가족 약 500명을 승선시킬 계획이었으나 의외로 희망자가 적어서 70명 정도 승선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당일 연합국군사령부(SCAP)가 18시 이후 백톤 이상의 선박은 일체 항해금지의 명령을 내렸고 이에 흥안환과 덕수환이 일본으로 1회 출항한 후 일시 운항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부산항 부두에는 2천 명 정도의 일본인 귀환자가 남아 있었고 8월 31일에는 만 천명에 달해 대혼란을 자아냈다. 이에 연락선에 한해 항행해금이 실시되었고 흥안환이 1주일 만에 센자키(仙崎)에서 저녁 무렵에 부산항으로 입항했다. 이처럼 연락선에 대한 승선은 부산거주자의 경우 9월 중순에서 10월 하순까지는 곤란했기 때문에 기범선이용에 의해 귀환이 수행되었다. 당시 기범선의 승선 운임은 가라쓰(唐津), 하카타(博多), 시모노세키(下関), 센자키(仙崎)행이 어른 1인 150엔, 아이 1인 100엔, 오사카행 어른 200엔, 아이 150엔이었다.

- 27) 대표적인 인물로 패전 당시 삼화(三和)고무 주식회사 사장으로 부산상공회의소 총재를 맡고 있던 요네쿠라 세이자부로(米倉清三郎)와 조선방직 전무 도키오카 쇼헤이 (時岡昇平)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패전 직후 고무신 제품과 광목을 한꺼번에 시장에 방출하고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일본으로 귀환했다(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 岩波書店, 2002, 199면(최영호, 「해방 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환」, 『항도 부산』2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8, 97면 재인용)).
- 28) 加藤聖文(編), 『海外引揚関係史料集成(国外篇)第19巻』(朝鮮篇二, 『終戦後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状況および引揚(二)』), 東京: ゆまに書房, 2002, 310면(최영호(2008), 위의 논문, 97~98면 재인용).
- 29) 森田芳夫(1964), 앞의 책, 122면.
- 30) 田邊多聞, 『終戦直後の釜山地方交通局』, 『朝鮮交通回顧録 別冊 終戦記録編』, 1976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286~287면).

부산거주자의 반수 가깝게는 법선에 의해서 귀환을 완료했으며 10월 20일 이후 물건을 적재해서 운송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함께 기범선 운항도 정지되어 또 연락선에 의한 계획귀환이 이행되곤 했었다.³¹⁾ 이렇게 해방직후 일본인들은 개별적으로 선박을 빌려 서둘러 귀환한 사람을 시작으로 차츰 귀환선이 정비되면서 대규모의 귀환이 부산항을 통과하여 이루어졌다. 남한주둔미군최고지휘관 하지(John R. Hodge) 중장도 매일 평균 4천명의 무장해제 일본군을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수송할 계획이 완료되었고 수송될 군인은 증기선으로 이재민 수용항으로 향할 예정이며 휴대품은 개인 신변의 물건, 10일간의 식량 및 의약품에 한정했다고 밝혔다.³²⁾

부산항에 있어서 일본군대 및 일반일본인의 귀환처리에 관한 절차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³³⁾

먼저 일본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금지제품검사로서 40명의 검사반을 구성해 각각 2열로 이들의 신체 및 소지금을 검사했고 민간인에게는 천 엔³⁴⁾, 사관에는 오백엔, 하사관병에게는 이백 엔의 소지금을 인정했다. 둘째, 안내반이 역 또는 부두로 일본 군인을 맞이했고 군인을 부두처리지점으로 유도해 기차에서 내리는 즉시 무기와 총은 일절 빼앗았다. 셋째, 운송반은 일본으로 가는 군인, 민간인으로부터 회수한 화물을 운반했고 정리반은 귀환할 일본인에서 빼앗은 물품, 화물을 구분해서 각각 창고에 옮겼다. 이처럼, 검사가 끝나면 일본군인은 승선을 했었고 승선반은 배타는 것을 감독했으며 각 선박에 일본군인 탑승 수는 일본군요색 사령관이 결정해 미군의 승인을 얻어냈다. 승선이 끝나면 수송통제관에 보고해 배 출발명령이 있었고 군인가족의 처리순서는 일반일본인과 같았지만 단지 군인과 함께 그룹을 지어 승선했다.

다음은 일반일본인의 승선절차를 살펴보자. 일반일본인이 승선할 때는 부산일본인 세화회와 안내반이 열차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러나 만약에 승선이 늦을 경우

31) 丸山兵一, 「慶尚南道及び釜山の引揚(一)」, 『同和』제 165호, 1961.09.01.(四).

32) 「무장해제 일본병, 연일 4천명을 송환, 일반물자의 반출은 불가」, 『京城日報』, 1945.9.29.

33)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80), 앞의 자료, 25~28면.

34) 쫓겨 가는 일본인들의 재산은 정당한 수속에 의해 팔고 있지만 그들은 우편저금통장이나 은행예금통장을 일체로 못 가져가게 되었다. 그리고 부산을 떠날 때에 한사람이 천 엔밖에는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귀환 일본인들, 예금통장 持去 금지」, 『자유신문』, 1945.11.3).

해방직후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과 재산처리 과정 고찰

는 일본인세화회에 등록해서 숙박과 음식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부두에 가까운 10 개소의 건물에 숙박했고 귀환절차 순서는 군인의 경우와 같았다.

부산항에서 선박수송은 계획적으로 이행되었으나 계획수송에 따르지 않고 개 개 혹은 단편적으로 부산으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숙소(宿舎)에 수용해 단체를 결성시킨 뒤 승선시켰다. 특히 부산거주자인 경우는 단독승선을 금지했고 일정한 정원(250명)이 되도록 지은사(智恩寺) 수용소에 수용한 후 단체를 결성시켜 승선시켰다. 다음 표[2]는 부산에서 수용소의 체류인원이 가장 많았던 1945년 10월 2일자 기준으로 당시의 수용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³⁵⁾

[표2] 부산의 수용소 체류인원 및 정원(1945년 10월 2일자 기준)

수용소	체류인원(정원)	수용소	체류인원(정원)
동본원사(東本願寺)	2,500(1,000)	출운대사(出雲大社)	700(300)
서본원사(西本願寺)	2,500(1,000)	마스라오관(ますらお館)	2,500(1,500)
금강사(金剛寺)	700(300)	제7국민학교(第7國民學校)	4,700(2,000)
지은사(智恩寺)	700(300)	식물검사소(植物檢査所)	1,500(700)
묘각사(妙覺寺)	300(150)	세관창고(稅関倉庫)	8,700(5,000)
금광교(金光敎)	300(150)		
합계		합계	25,000(12,400)

출처: 丸山兵一, 「慶尚南道及び釜山の引揚(二)」, 『同和』, 1961.10.01.(四).

이처럼 본국으로의 귀환 길에 오르기 위해 부산항으로 몰려들었던 일본인들은 상황에 따라 숙소나 수용소에서 대기하면서 승선절차를 따랐다. 경성일보에 의하면³⁶⁾, 부두검사는 조선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지만, 부두는 미군인 이외는 절대 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물건 검사는 모두 미군 손으로 실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자는 한반도의 노부인이 검사했고 환자 등의 보행이 곤란한 사람은 유조선 외 방법으로 승선을 허락했다. 승선할 때는 선은권(鮮銀券)을 소지하고 있으면 일은권(日銀券)으로 교환되었지만 가능하면 일은권(日銀券)으로 바꾸어두면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남한 거주 일본인들이 부산항도착까지와 도착 후의 귀환

35) 丸山兵一, 「慶尚南道及び釜山の引揚(二)」, 『同和』 제 166호, 1961.10.01.(四).

36) 「書留による契約作成 賣買の全事実記載 財産移讓規定第四項目発表」, 『京城日報』, 1945.10.31.

절차 과정과 아울러 본국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이 남한에서 일구어 놓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살펴보자.

Ⅲ.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 과정

1. 법령 제2호에 의거한 귀속재산 처리

일본패전 후 재조선일본인들의 소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후처리로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 패전국 소유재산의 동결과 이전 제한을 규정한 법령 제2호를 발표하여 8월 9일 현재 남한 소재 일본 재산의 미군정 관리를 선언하였다. 이 절에서는 법령 제2호 제 3조의 규정에 나온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일본인의 재조선재산양도는 9월 25일 일반명령 제2호 제 3조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행해졌지만, 아놀드 장군은 10월 23일 그 구체적인 세칙으로서 제 1항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일본항복 당시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소속해 있는 재산은 미군정청의 재산이 되며 미군정청이외의 재산을 사용, 또한 지배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성명함과 아울러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어디까지나 존중할 방침인 것을 강조했다. 불법 취득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재산소재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군정관리에 보고해 재산관리를 군정관리에 양도해야만 했다. 또한 공공재산을 임의로 지배하고 이동시킨 것은 그 재산을 빨리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반환해 미군정청관리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사유재산 취득에 대해 3개를 강조³⁷⁾했다. 제 2항목은 10월 25일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식량·의류·

37) ① 조선인은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군정청에서 발표된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불은 가장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군정청 재산관리인의 구좌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층, 다음 3항목도 이번 주 중에 발표됨을 공지했다.
① 식량·연료·의류 등의 생활필수품은 어떤 방법으로 일본소유자에서 구입해야하는가 ② 토지

일용품·연료 등 생활필수품에 관한 항목이었다. 이런 생활필수품을 획득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는 일부분에 한해서 생활필수품을 묻어두었기 때문이므로 일본인들은 필요이상의 사자품(死藏品)³⁸⁾을 다른 필요 자에게 판매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조선인은 남의 것을 많이 훔쳐 식량·의류·연료 등의 일본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부정적인 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남의 것을 훔친 재산은 속히 군정청에 반환하고 일반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시장에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 판매의 점포를 소유 경영하는 일본인은 군정청의 법률에 의한 정당한 운영처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승해도 되었다. 폭력으로 일본인의 점포를 빼앗은 조선인은 가장 가까운 경찰에게 관리를 넘겨주었고 또 숨겨진 점포는 군정청에서 고용하고 또는 임명된 조선인에 의해 전 민중을 위해 운영하도록 되었다. 수개월을 넘은 고난을 경감하기 위해 군정청은 3가지³⁹⁾를 잘 준수할 것을 일반민중에게 권고했다. 제 3항목은 10월 27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인 소유의 주택, 상사 및 토지 등의 매매대차 등 기타 사용 등에 관해 일본인 개인과 상담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매자가 재산매매 및 임대 등에 관한 지불금은 일본인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할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은행 또는 우편국 재산관리관의 특별계좌에 납입할 것 등이었다.⁴⁰⁾ 제 4항목은 10월 30일 발표했고 그 내용은 일본인 소유의 토지·건물·기업재산·공장·광산 등과 같은 대규모의 영업재산에 착수되어 운영매수 방법이 설명되었다.⁴¹⁾ 즉, 매수인과 일본인 소유자와의 사이에 서면에 따른 계약을 작성해야 했고 매수인은 계약 작성에 대

및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일본인 개인 소유자에서 구입해야하는가 ③ 큰 사업회사의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또 구입할 것인가(「不法取得者は報告 正当な價格で買入」, 『京城日報』, 1945.10.24; 「日本人財産賣買規定發表, 合法的購入을 認定, 代金は 銀行, 郵便局에 預金」, 『新朝鮮報』, 1945.10.24; 森田芳夫(1964), 앞의 책, 933-934면.)

38) 「死藏の生必物資を速かに販売せよ 日本商人も營業可能」, 『京城日報』, 1945.10.26.

39) ① 일본인 소유재산을 포함해 타인 개인소유물을 존중하라 ② 생활을 위해 근면정직하게 움직이라 ③ 과잉의 물자를 시장에서 판매하라 ④ 물건을 훔쳐서 파는 것을 방지하라(「死藏の生必物資を速かに販売せよ 日本商人も營業可能」, 『京城日報』, 1945.10.26; 森田芳夫(1964), 앞의 책, 934면(여기서는 ③과 ④를 합쳐서 ③으로 나타냈고, 가능한 정상적인 상도(商道)를 조장하라는 문구가 추가 삽입).

40) 「外食券引揚證明書の交付を忘れるな 宿泊料は八円から十円程度」, 『京城日報』, 1945.10.27.

41) 「書留による契約作成 賣買の全事実記載 財産移讓規定第四項目發表」, 『京城日報』, 1945.10.31.

해 조선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매수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법령 제2호 내용은 미군정이 일본재산 관리방법으로 일본 국공유 재산은 미군정이 접수하여 관리하고 일본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인정하여 매매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사유재산의 소유권 인정은 국제법상의 규정, 즉 적국의 재산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어디까지나 존중할 방침인 것을 강조하였다.⁴²⁾ 그리고 미군정은 자유매매를 인정했지만 그 거래대금을 조선은행⁴³⁾이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령 제2호에 근거한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원칙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인정에 대해 한국 내부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는 법령 제2호의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인정이 그 당시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들은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은 그들 일본인이 적수공거(赤手空擧)로 식민지조선에 건너와 총독정치의 강력한 자호(庇護)아래에 착취와 사기로 조선인의 손으로부터 강탈하여 부를 이룬 것이니 이는 당연히 조선인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지난 8월 15일 이전까지 말할 수 없는 허위정치와 폭력으로 조선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것도 말할 것이 없이 조선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또한 일본인 재산불매동맹을 결의한 청년단체대표자회에서도 조선의 신탁관리설에 대한 절대 반대의 성명을 발표했었다.⁴⁵⁾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재산에 대한 불매동맹 결성을 촉구했고 만약에 반역 이적 행위자에게는 경고를 했었다.⁴⁶⁾ 반

42) 「不法取得者は 報告 正当な價格で買入」, 『京城日報』, 1945.10.24.

43) 조선은행에는 주택에 대한 거래매매 이외에도 일본인의 실적주식공채저당권(實石株式公債抵當權) 기타 귀중한 예술품을 접수해서 재산관리과 명의로 보관해 두라고 재산관리과에서 지시, 그리고 일본인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은행에서는 접수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두라고 지시(「朝鮮銀行의 日本人財産接收」, 『광주민보』, 1945.11.24.)

44) 「일본인 재산의 처리문제」, 『자유신문』, 1945.10.25.

45) 「青年團體代表者會 결의 표명」, 『자유신문』, 1945.11.2(참가단체는 青年研學會, 朝鮮建國青年會, 朝鮮學兵同盟, 解放青年同盟, 建青會, 東亞青年會, 朝鮮解放青年同盟, 建國婦女同盟青年部, 出版勞組青年會, 朝鮮青年團, 仁旺青年同盟, 北岳青年同盟, 靑丘突擊隊, 解放青年團, 駱山青年同盟, 朝鮮學徒隊, 朝鮮勤勞青年同盟, 朝鮮軍人同盟, 革新青年同盟, 京西青年同盟 외 6개 단체).

면, 일본인들은 일본귀환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3개 사항⁴⁷⁾을 부탁했다.

당시 일본인재산 매입 양에 대한 어떤 한정선이 없으면 특수한 계급이 독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조선인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으나 아놀드 소장은 “9월 25일부터 발표된 일본인 재산 처분령에 의하면 파는 사람은 그 매매를 완료하기 위하여 군정청으로 그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군정청법무국에서는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시가 혹은 매매행위 일체를 심사하는데 이때 특수계급에 독점이 된다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에게 편재하게 된다든지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⁴⁸⁾ 일본인들의 재산을 사 놓는 것은 큰 매매가 되며 한국인 측에서 이것을 사지 않는다면 군정청이 이를 접수할 것이나 급기야는 이런 매매가 조선의 부가 되고 재산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령 제2호 내용인 일본인 사유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여 매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식민지속에서 일본의 조선 침입 및 강탈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한국인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결과를 초래했었다. 따라서 일본인의 재산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체 결재하지 말라⁴⁹⁾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법령 2호에 근거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매매를 허용한 것이 적국의 재산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어디까지나 존중한다는 국제법에는 준수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내부에는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을 신문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너무 자기 국가의 큰 재산은 생각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개인이익 만에 눈이 어두웠다고 군정청으로도 할 수없이 일본인 재산매매를 법문화하여 인정케 했다고 주장했다.

46) 「日本人財産, 不買同盟結成하라, 反逆利敵行爲者에게 警告」, 『嶺南日報』, 1945.10.17.

47) ① 군정청의 결정에 따르면 1주일동안 500엔까지 생활비는 조선내 금융기관에서 인출예정 ② 예금통장, 송금증서 등은 일본으로의 휴대 허락 바람 ③ 한사람에 대해 2개월분의 생활용품 탁송을 허용부탁(中央日韓協會·友邦協會,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録一』, 朝鮮資料 第三号, 1956, 66~71면.)

48) 「일본인 재산, 매입에 量 제한은 없다」, 『자유신문』, 1945.10.17.

49) 「일본인의 재산 매매는 일체로 결재하지 말라」, 『자유신문』, 1945.11.24.

2. 법령 제33호에 의거한 귀속재산 처리

법령 제2호에 근거한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원칙이 결국은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매매허가로 재조선 일본재산이 한국의 소유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에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정부는 1945년 11월 20일 연합국군총사령부 앞으로 「남조선재류 희망의 일본인 안주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과 함께 일반일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기사⁵⁰⁾를 내어 재조선미군정당국의 호의적 배려를 얻도록 사령관의 알선을 요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한국 내에서의 강력한 반발수습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 제2호의 방침을 변경하여 1945년 12월 6일 미군정 법령 제33호를 공포했고 제 2조에서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것을 언급했다.⁵¹⁾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조선 내 일본국공유 및 사유재산 전부를 1945년 9월 25일부로 한국 내 일본국공유 및 사유재산 전부를 주한미군정에 귀속시키고, 이후 미군정청 사령관의 책임 하에 임대 및 매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군정청 재산관리과 래슬리 중좌도 가옥 기타 재산문제에 대해 1946년 1월 4일 군정청 기자단과 회견⁵²⁾하고 그 주지내용은 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해 어떤 것이든 군정청 소유가 된다는 것과 군정청의 지시와 허가 없이 이것을 소유하거나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불법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일본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몰수한 시점을 8월 9일로 한 이유를 최영호(2013)는⁵³⁾ 일본 정부가 연합국에 대해 포츠담선언 수락 의사를 통보한 날짜이기 때문에 스캡(SCAP)과 주한미군정은 이 날을 기점으로 귀속재산 문제를 파악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임건언(1967)은⁵⁴⁾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이 종결된 시점으로서,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들은 임박한 공식적인 항복 선언에 대비하여 각종의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50) ① 재류일본인 구제자금송부 허가를 얻는 것(당분간 1천만엔 정도 재경성일본인 세화회에 송금)

② 조선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일본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일 ③ 일본인이 남겨둔 재산보호(森田芳夫(1964), 앞의 책, 941면.)

51) 법원행정처, 『구법령집(하)』, 47면; 森田芳夫(1964), 앞의 책, 934면.

52) 「일본인 재산 무단 관리나 침입은 불법, 아직 처치할 방침은 미정」, 『자유신문』, 1946.01.05.

53)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논형, 2013, 42면.

54) 임건언, 『한국현대사』, 지성당, 1967, 11-12면(김성욱(2011), 앞의 논문, 96면 재인용).

일본으로 무단이전 시킬 가능성이 높았는데,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처분행위 또는 이전행위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다.

9월 25일 법령 제2호로 미군정청이 인정한 사유재산 수속에 대해서도 법령 제33호 공포로 조선인과 매매계약을 한 거래는 일체 무효로 되었다. 일본인과 주택매매 거래를 한 조선인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법령 제33호 공포로 집의 소유자는 군정청인 것으로 알려졌고 한층 그 집의 집세를 군정청에 지불해야 했다.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⁵⁵⁾ 경기도재산관리과의 조사에서는 在경성일본인가옥의 건평 1평을 최저 천 엔에서 2천 엔까지 평가해 약 5%를 1년의 집세로서 징수하도록 하고 在경성일본인 가옥이 약 3만 5천호로서 그 집세 수입은 연 1억 엔으로 추산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일본인과 주택매매거래를 한 조선인은 주택이 자기소유로 되었다고 생각해 일본인에게 표면상의 계약과는 달리 현금을 몰래 전한 경우는 그 금액의 반환을 일본인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현금을 받아 도망치듯이 해서 귀환한 일본인도 있었으며 이 당시 남한의 일본인은 1/10로 줄은 상태였다. 법령 제33호가 발표된 1945년 12월 6일 경에는 많은 일본인이 이 법령을 모른 채로 돌아갔으며 귀환한 후도 본국에서의 어수선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 하에 조선에 공포된 이 법령을 알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귀환당시 탁송한 물건도 일본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조선인과의 매매계약도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1945년 12월 14일 재산관리령 제2호 「미군정청 취득 일본인 재산의 보고 및 재산의 경영점유 및 사용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2월 26일 아놀드 군정장관은, “미군점령지역의 일본인 이름으로 전 재산을 접수했지만, 이것은 조선에 있었던 일본의 지배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사업 및 금융기관은 적당한 조선인의 경영자에 양도해 자산은 장래 조선독립정부에 이관해야만 하고 미군이 보관한다”고 발표했다.⁵⁶⁾ 그러나 이런 법령 제33호 공포에 대해 귀환자들의 개인 재산을 보장하지 않는 점령당국에 대해 일본인들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⁵⁷⁾

55) 森田芳夫(1964), 앞의 책, 944면.

56) 森田芳夫(1964), 앞의 책, 944-945면.

57) 『引揚同胞』1卷 3-4号, 14-16면(최영호, 「韓半島 居住 日本人의 歸還 後 團體 結成과 財産權 補

이와 같은 법령 제33호에 근거한 일본인 공·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불인정은 적국의 사유재산 몰수를 금지한 헤이그 법규에 위반되었기에 미군정은 사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통해 미군정이 행한 귀속재산관련 처분을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하도록 해서 협정이 이루어졌고 차후 발생하는 귀속재산 관련 모든 분쟁의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서 취한 귀속재산 처리에 대해 일본이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 법령 제33호 발표에 따른 당시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한 자료는 수집이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이 법령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불인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지는 향후 다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필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이룬 재산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강탈해서 획득한 재산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매매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남한 거주 일본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한국정부에 귀속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미군정의 재산처리과정의 일환으로서 법령 제2호와 법령 제33호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법령 제2호와 제33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귀속재산에 대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는 김기원(1990), 공제욱(1993)⁵⁸⁾, 최봉대(2000)⁵⁹⁾, 배석만(2014) 등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해방 직후 귀환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산지역에서 두 법령의 내용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귀속재산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償要求」, 『한일민족문제연구』21, 한일민족문제학회, 237면 재인용). 지난날 서울 세화회가 권유하여 귀환 직전에 탁송하물 보관업자에게 맡긴 집이 1945년 12월 6일 공포된 미군정령 법령 제 33호에 의해 미군정청에 몰수되었다고 하는 점을 공지하면서, 기관지에 “우리의 힘이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보도했다.

58)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연구』, 백산서당, 1993.

59) 최봉대, 「1950년대 서울지역 귀속사업체 불하실태 연구」, 『국사관논총』 94, 국사편찬위원회, 2000.

3. 부산지역에서의 귀속재산 양상

해방직후 남한에 귀속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당시 미군정의 정책적 혼란 속에서 귀속재산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관리부족으로 어려웠었다. 더구나 일본인에 의한 귀속재산의 무단처분과 파괴행위 그리고 한국인의 무단 점유 및 소유권 주장, 무단처분 등으로 귀속재산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기는 더 어려웠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여 추론하고 있을 뿐이며 김기원(1990)도 귀속재산의 규모를 귀속농지, 귀속기업체, 기타재산의 3종류로 분류해서 설명했다. 귀속농지는 미군정법령 52호에 의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으로 설립된 신한공사가 관장했고 경지의 경우 논 20만 정보, 밭 6만 정보, 기타 대지, 과수원, 임야 등 5만 5천 정보 정도였으며 신한공사의 경지는 전체 남한 경지의 12.3%였다. 귀속기업체에 대해서 『1949년도 경제연감』은 귀속사업체를 총 3,089개로 나타냈고 김기원의 경우 해체·소멸되어 버린 것들을 제외한 귀속기업체의 숫자는 미군정 말기에 실패 미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대략 2,500~3,000개였다고 추정하였다. 기타재산은 상점, 음식점, 여관, 기타를 포함한 재산으로 남조선과 도정부 상공부의 『1947년 상공행정연보』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총 13,461건이었다. 여기서 경남지역은 상점 943, 음식점 429, 여관 153, 기타 2,133, 합계 3,658건 이었다.⁶⁰⁾

그리고 재조선일본인들의 귀환이 대부분 이루어졌던 부산항 소재지인 부산지역에 대한 귀속재산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대래·배석만(2002)도 언급했듯이, 일제 말 자료들을 은폐하였기 때문에 부산에서 해방직전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사유재산 및 사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해방직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었던 귀속재산에 관한 완전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상황을 이용하여 재부산일본인들은 미군정이 들어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의 재산을 빼돌린 것은 물론이고 창고에 쌓여 있던 원료와 완제품을 대량으로 방매하였다. 부산에서는 식량영단, 금융조합 그리고 남선 전기 등이 우선적으로 접수되었으나 당시 사회는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귀속사업체

60)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韓日民族問題研究』26,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55-59면.

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마이즈미(今泉)알루미늄공업소의 이마이즈미 류(今泉龍)는 원료가 있음에도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여 다량의 알루미늄 솔을 만들어 중간상인에게 방매하였고 남선(南鮮)수산 사장 마쓰모토 코이치로(松本耕一郎)가 어망·어선·어구를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다. 그리고 조선방직 전무 도키오카 쇼헤이(時岡昇平)은 광목을, 삼화고무 사장 요네쿠라 세이자부로(米倉清三郎)는 고무신을 방매하여 모은 일본 지폐 백원권 10가마를 배에 싣고 일본으로 도망쳤다.⁶¹⁾ 또한 일본인들은 물자의 방매와 연관해서 사업장과 기계들을 고의적으로 파괴했으며 회사의 자금과 설비 등을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 수산재벌 카유우 겐타로(香雄源太郎)는 현금과 주권, 채권, 보험증서 등과 하물을 몰래 밀항하려다가 적발되었다.

부산에 미군이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17일이었으나 그 이전에 건국준비위원회 부산지부 산하 치안대가 8월 18일에 결성되어 일찍부터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재산도피를 감시하였다. 그러나 귀속사업체의 완전한 접수는 미군의 진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완전한 접수방침과 접수체계가 완성되기 까지 귀속사업체가 접수되지 않고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컸다. 이에 모든 일본인 재산의 처분을 동결하고 접수관리를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6일 군정 법령 제33호의 발포에 의해서였다. 당시 미군정에 의해 귀속사업체의 접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제 말에 부산에 존재했던 일본인 제조업체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1940년 12월 말에 조선총독부식산국(1942)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584개의 공장이 있었고 그 가운데 476개가 일본인 소유였다. 그리고 부산부(1942)자료에 의하면 1941년 당시 부산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일본인 소유공장은 약 439개였다.⁶²⁾ 한층, 1948년 『남조선 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에 의하면 1944년 부산에 650개의 제조업체가 있었고 여기에서 일본인 소유 80%를 감안하면 대략 일본인 소유공장이 약 520개 정도이었을 것이다.⁶³⁾ 이렇게

61) 김대래·배석만,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경제사학』 33, 경제사학회, 2002, 66-67면; 배석만·김대래(2008), 위의 논문, 48면.

62) 배석만·김대래(2002), 위의 논문, 68면.

63) 배석만·김대래(2002), 위의 논문, 71면.

존재했던 일본인 소유 제조업 사업체가 그럼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접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연감』에서는 1944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해방직후 귀속사업체로 접수되었어야 할 사업체는 560여개였는데, 실제로 접수가 확인이 된 것은 금속(36개), 기계(73개), 화학(66개), 요업토석(27개), 섬유(50개), 식료(87개), 목재제재(21개), 인쇄제본(13개), 기타(48개) 총 합계 421개로 당초 접수대상의 약 74.64%만이 접수되었음을 확인되었다.⁶⁴⁾ 그러나 이런 귀속사업체에 대한 개별 기업별 연구에 대한 자료가 희박하고 일부 남아 있는 자료들도 내용이 빈약하다. 김대래·배석만(2009)도 귀속사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유일하게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귀속사업체의 접수과정에서 파악된 사업체를 기술했다. 해방된 시점에서 부산에 몇 개의 화학 산업 관련사업체가 존재했는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으므로 일제 패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42년 釜山府가 출판한 『釜山の産業』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사업체 현황을 설명했다. 『釜山の産業』에서 화학 산업의 범주에 넣은 업종은 제약, 비누, 석유, 양초, 고무, 코크스, 연탄이었고 1941년 3월 시점에서 부산지역에서 일본인 소유업체가 31개였다. 여기에 1941년 4월 이후 신설 사업체 16개를 합쳐 총 47개의 일본인 사업체를 당시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의 규모로 규정해서 귀속사업체로 접수될 대상으로 파악했다.⁶⁵⁾ 그러나 『경제연감』에서 실제 접수가 확인된 사업체는 28개로 60% 접수율을 보였었고 이렇게 접수된 사업체의 대부분은 관리과정에서 유실되지 않고 불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해방 후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개별기업이 파산되어 현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업주가 일본으로 밀반출의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귀속사업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제33호의 발포에 의해서 모든 일본인 재산의 처분을 동결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접수관리를 시작했다. 이로써 미군정청은 부산시내 일본

64) 배석만·김대래(2002), 위의 논문, 35면.

65) 김대래·배석만,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항도부산』2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51~87면.

인 혹은 일본인 단체의 전 부동산을 소유했고 또한 재산관리관을 두어 귀속재산에 대한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는 접수사무를 진행시켰다.

IV. 결론

본고는 해방직후인 1945~1946년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과 재산처리과정 에 대해서 고찰했다. 먼저, 부산항도착까지의 귀환절차 및 특징과 부산항에서의 귀 환절차 및 특징에 대해서 고찰했다.

부산항도착까지 일반일본인 귀환절차의 경우, 1945년 9월 25일까지 귀환자의 수 송은 외사과의 관리하에 안내소가 실시했고 1945년 10월 16일 일본인들의 숙박시 설과 구제에 관한 업무를 안내소에서 세화회로 옮겼다. 귀환할 모든 대상자는 장티 푸스와 천연두 예방주사를 의무적 접종했고 일본인 세화회 대표가 귀환자들의 철도 운임에 대한 금액을 안내소에 대행했다. 안내소에서는 은행어음과 여행증명서를 발행해 일본인세화회에 교부했고 다시 세화인 대표가 이것을 개인에게 배부했다. 외사과는 귀환자에게 수송일시를 알리기 위해 적어도 수송예정일 전날에 일·영문 의 라디오방송문을 준비해 안내소에 통지했다.

특별집단인 일본군인과 그 가족의 경우는 일본군연락부가 경성지역 외에 있는 제대군인에게 출발시간을 알렸다. 수송열차는 통상 귀환자의 수송방법과 같이 외 사과가 준비했고 일본군 연락부는 일본인세화회에 협력해서 장티푸스와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위해 일본육군의ワクチン을 사용해 귀환자의 처리를 맡았다. 귀환 작업에 있어서 기타 순서는 앞에 기술한 일반인 귀환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부산항에서의 귀환절차를 살펴보면, 일본군인과 그 가족인 경우는 금지 제품 검사반, 안내반, 수입반, 운송반, 정리반으로 구성이 돼서 귀환절차를 진행했 다. 또한 일반일본인은 부산일본인 세화회와 안내반이 주축이 되어 승선절차를 실 시했다. 부산항에서 연락선에 대한 승선은 부산거주자의 경우 9월 중순에서 10월 하순까지는 곤란했기 때문에 기범선이용에 의해 귀환이 수행되었다. 수송은 계획

적으로 이행되었으나 계획수송에 따르지 않고 개개 혹은 단편적으로 부산으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숙소(宿舎)에 수용해 단체를 결성시킨 뒤 승선시켰다. 특히 부산거주자인 경우는 단독승선을 금지했고 일정한 정원(250명)이 되도록 지은사(智恩寺) 수용소에 수용한 후 단체를 결성시켜 승선시켰다.

다음은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매매를 허용한 법령 제2호는 한국 내부에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었다. 이에 미군정은 1945년 12월 6일 법령 2호의 방침을 변경하여 일본인 사유재산 소유권을 불인정하고 이에 모든 재산을 주한미군정에 귀속시켜, 이후 미군정청 사령관의 책임 하에 임대 및 매각을 허용한다는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 제33호는 적국의 사유재산 몰수를 금지한 헤이그법규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일본이 한일국교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일제침략에 대한 배상에 대해 이른바 역청구권의 제기제공이 되었다. 그리고 이 법령 제2호와 법령 제33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에서의 귀속재산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해방직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었던 귀속재산에 관한 완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재산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경제연감』에서 기록된 것은 194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방직후 귀속사업체로 접수되었어야 할 사업체가 560여개였다. 그러나 실제로 접수가 확인이 된 것은 금속(36개), 기계(73개), 화학(66개), 요업토석(27개), 섬유(50개), 식료(87개), 목재제재(21개), 인쇄제본(13개), 기타(48개) 총 합계 421개로 당초 접수대상의 약 74.64%만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접수된 사업체의 대부분은 관리과정에서 유실되지 않고 불하가 이루어졌었다.

〈참고문헌〉

연구논문

김경남,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21, 동북

- 아역사재단, 2008.
- 김성욱,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 『법학연구』42, 한국법학회, 2011.
-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韓日民族問題研究』26,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 김대래·배석만,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경제사학』33, 경제사학회, 2002.
- _____, 「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접수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2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8.
- _____,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 『항도부산』2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 신재준, 「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군사』10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7.
- 이대근,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연구』1, 한길사, 1983.
- 李淵植, 『解放後韓半島居住日本人歸還에 關한 研究- 占領軍·朝鮮人·日本人 3者 間의 相互作用을 中心으로』, 서울市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 이연식, 「해방 후 남한 거주 일본인 송환문제를 둘러싼 갈등 - 조선총독부와 남한사회의 인식 및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6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_____, 「해방 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환」, 『항도 부산』2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8.
- _____,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21, 동북아역사재단, 2008.
- _____, 「韓半島 居住 日本人의 歸還 後 團體 結成과 財産權 補償 要求」, 『韓日民族問題研究』2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해방직후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양상과 재산처리 과정 고찰

- _____, 「군산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 - 세화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 『韓日民族問題研究』26,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 황선익, 「해방 전후 在韓日本人의 敗戰 경험과 한국 인식 -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34, 한국학연구소, 2010.
- _____, 「해방 후 귀환구호운동의 전개와 미군정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8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단행본

-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 푸른산, 1990.
-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역사비평사, 2012.
-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번역서 및 외국논저

- 井手勇, 「終戰後の朝鮮(一)-米軍政廳とその施政方針-」, 『同和』, 1961.10.1.(四).
-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1964.
-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第一卷』, 東京: 巖南堂書店, 1979.
- _____,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第二卷』, 東京: 巖南堂書店, 1980.
- 山名酒喜男,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録(一): 終戰前後に於ける朝鮮事情概要』, 東京: 友邦協會, 1956.
- 若槻泰雄, 『戰後引揚げの記録』, 東京: 時事通信社, 1991.

기타자료

- 「朝鮮銀行의 日本人財産接收」, 『광주민보』, 1945.11.24.
- 「不法取得者は 報告 正当な價格で買入」, 『京城日報』, 1945.10.24.
- 「死藏の生必物資を速かに販売せよ 日本商人も營業可能」, 『京城日報』, 1945.10.26.
- 「外食券 揚明書の交付を忘れるな 宿泊料は八円から十円程度」, 『京城日報』, 1945.10.27.
- 「書留による契約作成 賣買の全事實記載 財産移讓規定第四項目發表」, 『京城日報』, 1945.10.31.
- 「日本人財産賣買規定發表, 合法的購入을 認定, 代金は 銀行, 郵便局에 預金」, 『신조선보』, 1945.10.24.
- 「日本人財産, 不買同盟結成하라, 反逆利敵行爲者에게 警告」, 『영남일보』, 1945.10.17.
- 「일본인 재산, 매입에 量 제한은 없다」, 『자유신문』, 1945.10.17.
- 「일본인 재산의 처리문제」, 『자유신문』, 1945.10.25.
- 「靑年團體代表者會 결의 표명」, 『자유신문』, 1945.11.2.
- 「일본인의 재산 매매는 일체로 결재하지 말라」, 『자유신문』, 1945.11.24.
- 「일본인 재산 무단 관리나 침입은 불법, 아직 처치할 방침은 미정」, 『자유신문』, 1946.01.05.
- 「일본인 재산의 배상 대상 반대」, 『자유신문』, 1946.11.13.

<Abstract>

A Study for the pattern of repatri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South Korea and the Process of property disposal right after Liberation

Kong Mihe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repatriation patterns of Japanese residents in South Korea from 1945 to 1946 right after liberation and the process of property disposal. First, the proced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patriation at Busan por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dures of repatriation up to the arrival Busan port were examined.

In the case of general Japanese until their arrival at Busan Port, transportation of returnee until September 25, 1945 was carried out by the information center under the management of the Foreign Affairs Division, and on October 16, 1945, the Japanese people's lodging facilities and relief work were transferred from the information office to Sehwa Association. All repatriation were obligated to get typhoid and smallpox vaccinations,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Japanese Sehwa Association paid the information for the repatriation rail fares. The information desk issued bank drafts and travel certificates and handed them back to the Japanese Sehwa Association, which was distributed to individuals.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repared a radio broadcast in Japanese and English at least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transport date and notified the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center to inform the repatriation of the transport date.

In the case of a special group of Japanese soldiers and their families, the Japanese Military Liaison Office informed the departure time to veterans outside the Gyeongseong area. The transport train was prepared by the Foreign Affairs Division in the same manner as the repatriation transport method, and the Japanese military liaison department cooperated with the Japanese Sehwa Association to handle the repatriation using Japanese army wax for vaccination against typhoid and smallpox. Other procedures in the repatriation operation are the same as for the repatriation of

the general public described above.

And looking at the repatriation procedure at Busan Port, Japanese soldiers and their families consisted of an inspection group for prohibited products, an information group, an import group, a transportation group, and a rearranging group, and proceeded with the repatriation procedure. In addition, for general Japanese, the boarding procedure was carried out by the Busan Japanese Sehwa Association and the information team.

Regarding the process of property disposal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Decree No.2, which allowed the sale of Japanese private property by recognizing the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caused a strong opposition within Korea, so Decree No.33 was promulgated to disallow ownership of Japanese private property. In addi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this Decree No.2 and Decree No.33, the pattern of vested property in Busan was also examined.

Keywords : Japanese residents in South Korea, Port of Busan, repatriation procedure, property attributable, Decree No.2, Decree No.33

논문접수일 : 2021년 01월 05일

심사(수정)일 : 2021년 02월 0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09일